

[베트남]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-EU FTA 특혜 부여
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(2021. 02. 08.)

 한국산 섬유(Fabrics)를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가공된 의류제품(HS 제61, 62류)도 EU 수출 시 베트남산으로 인정하여 베-EU FTA 상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- 베트남산 의류가 EU 수출 시 베-EU FTA 상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산 직물로 제작되어야 하나, 베-EU FTA에 예외적으로 ‘한국산 직물’에 대해서만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원산지 누적조항이 반영되어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.(베-EU FTA 의정서1(제3.7조~3.11조))
- 동 원산지 누적조항은 지난 12.23일(EU 통관기준)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.

[베트남-EU FTA상 원산지 누적조항의 의미]



對EU 수출시 특혜관세를 위해 ①“직물 재직→의류 가공”까지 베트남내 실시 원칙, 예외적으로 한국(②직물 재직)→베트남(③ 의류 가공)이 실시하여도 누적으로 인정된다.

- 베트남은 의류생산에 투입되는 직물의 약 80%('19년 기준)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, 한국이 2위 직물 공급국인 만큼, 베-EU FTA 원산지 누적조항이 “한국산 직물”에만 적용되면 중국, 대만 등 경쟁국 대비 한국산 직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 지원센터(02-528-4064~67), FTA종합지원센터(국번없이 1380) 등을 통해 한국산 직물 원산지 특혜 조항 활용 방법을 보다 상세히 안내하고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.